

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일자 : 2000. 11. 21.

발 의 자 :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매년 채무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**할 수 있다는** **아니할 수도 있으므로, 하여야 한다**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골자

- 제2조 (기금의 조성) 의

제2항 : **할 수 있다** → **하여야 한다**로 수정함.

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2조(기금의 조성) 제2항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

“할 수 있다.”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 “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지방채상환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.)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

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
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. 다만,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자방식에 의한다.

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

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

제5조(기금관리·운용의 심의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.)를 둔다

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6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,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획정보실장
2. 기금출납원 : 예산담당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 정 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 (기금의 조성)②시장은 매년 일반 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<u>사용할 수 있다.</u>	제2조 (기금의 조성)②시장은 매년 일반 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<u>하여야 한다.</u>